

고집132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고집132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고집132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18**, **501호 (송도동, 송도건원테크노큐브)**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10-2859-260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1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5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12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13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21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43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45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49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51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 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고집13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18, 501호 (송도동, 송도건원테크노큐브)				
(주)고집132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		대표팩스번호
	2023.01.12		2023.01.12	김민서	010-2859-2600		
	법인등록번호	1201	11-1283647	사업자등록번호 149-		-86-0295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김민서 /	_ = 1.00		누구 송도과학로16번 도동, 송도건원테크노	
(임원)	(주)고집132	고집13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민서	010-2859-260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김은석 /	- 71400		수구 송도과학로16번 도동, 송도건원테크노	
(임원)	(주)고집132	고집13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민서	010-2859-260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고인석 /			수구 송도과학로16번 도동, 송도건원테크노	_
(임원)	(주)고집132	고집13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민서	010-2859-260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백수용 /			누구 송도과학로16번 도동, 송도건원테크노	
(임원)	(주)고집132	고집13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민서	010-2859-2600	

- 4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고집132	고집132	2023.4.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18, 105, 106호 (송도동, 송도건원테크노큐브)	김민서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고집132'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고집132	
상 호	고집132 00점	
상표(서비스표)	32 132	상표 출원번호 : 4020200208233
0—(11——)		상표 등록번호 : 4017142190000
그 밖의 영업표지	ই বিশ্ব বি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022년						
2023년	700,685	346,892	353,793	2,147,440	303,952	303,793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선인역구	이금	연 식귀	기간	직위	담당 업무
	71 [[12]	대표이사	2020.05.20 ~ 2023.04.24	고집132 / 개인사업자	회사 업무 총괄
	김민서	네표이자	2023.01.12 ~ 현재	(주)고집132 /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은석	사내이사	2023.01.12 ~ 현재	(주)고집132 / 사내이사	경영 지원
	고인석	사내이사	2023.01.12 ~ 현재	(주)고집132 / 사내이사	가맹점 관리
	백수용	사내이사	2023.01.12 ~ 현재	(주)고집132 / 사내이사	경영 지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급 	상근	비상근	격전구(3)	
2023년 12월 31일	4	0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 용
가맹본부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특수관계인 (사용인)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긴접 132	42.2	2020.11.18. 출원	출원 4020200208233		2021 04 00
		2021.04.09. 등록	등록 4017142190000	김대승	2031.04.09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п. 가맹본부의 고집132 가맹사업 현황

1. 고집132을 시작한 날 : 2020년 12월 29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0년 5월 20일)

2. 고집132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고집132	고집132	김민서	2020.12 ~ 2023.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18, 105, 106호 (송도동, 송도건원테크노큐브)
(주)고집132	고집132	김민서	2023.04 ~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18, 501호 (송도동, 송도건원테크노큐브)

3. 고집132 업종

영업표지	업 종		
¬ x1100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고집132	한식	돼지고기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고집132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2021.12.3	1		2022.12.3	1		2023.12.3	1
시크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	4	1	4	3	1	8	8	
서울	2	2		1	1		3	3	
부산									
대구									
인천	2	1	1	2	1	1	2	2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1		1	1		3	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년간 고집132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	2	0	0	0	4
2022	4	1	0	2	0	3
2023	3	6	0	1	0	8

6. 고집132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개)

구분	1 사 수 /이르 어어 ㅠ 기		정보공개서	οία	가맹점/직영점의 수		
でで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특수관계인 (배우자)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고집132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20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 매출액(연간 매출액		비고
	1001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8	778,923	21,045	1,465,267	41,684	220,238	5,506	7곳 산정
서울	3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해당없음						
대구		해당없음						
인천	2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해당없음						
대전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경기	3	해당없음						5곳 미만
강원		해당없음						
충북		해당없음						
충남		해당없음						
전북		해당없음						
전남		해당없음						
경북		해당없음						
경남		해당없음						
제주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 수치로 포함하였으나, 2023년 7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1개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8개가 아닌 실제 7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량, 시장 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고집132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고집132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8	50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고집132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		리 가맹점수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계약 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고집132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연수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09	032-810-11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계약 체결일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하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에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고집132'을 찾아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 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 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를 시행하고 있어, 별도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장범위		
지급조건		
보험금의 수령절차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고집132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2,000				
가입비	11,000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		반환 시에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 을 공제
교육비	11,000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교육 시작 1일 이전 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 되지 않음

2)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에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계약이행 보증금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22,000
가입비	11,000
교육비	11,000
계약이행보증금 (부가가치세 없음)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예치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 30평,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93,820				
내장재 공사	가맹본부	54,450	1,815	내장재 공사 1주일 전	공사전 계약취소	
간판 / 파사드	가맹본부	9,240	308	외부공사 1주일 전	공사전 계약취소	
덕트	가맹본부	10,440	348	덕트 공급 1일 이전	덕트 미공급시	
냉/난방기	가맹본부	18,150	605	냉/난방기 공급 1일 이전	냉/난방기 미공급시	30평형 : 3대 17평형 : 1대
최초 공급 원/부재료	가맹본부	550		원/부재료 공급 1일 이전	원/부재료 미공급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협력업체	990		POS 공급 1일 이전	POS 미공급시	POS 등 매입한 경우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점 점포에 대한 계약과 기타 건물주와의 계약 등을 결정하여 체결합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고집132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합니다. 가맹본부는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원할 경우에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건강진단서결과(보건증) 취득 가능자이며,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건강진단서결과(보건증) 취득 가능자이며,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금액(천원)					
납부일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을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영업표지 사용료 (로열티)	가맹본부	매출액의 2.5%	매월 10일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전국 단위 : 가맹본부 100% 분담 가맹점 단위 : 가맹점	다음 달 20일 이내			P.45 참고
		100% 분담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50% 분담	다음 달 20일 이내			P.45 참고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지급	교육 실시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교육 취소	교육 실시 이후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교체 실비	간판 발주 이전		간판 발주 이후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 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서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POS 사용료	협력업체	월 39.3	다음 달 5일			리스(36개월)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6%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수시	
위생관리	육부, 주방, 창고, 화장실 등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청결 상태를 확인	수시	문의: (010-2859-2600)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ス	급 기형	<u>-</u>	반환조건	반환될 수 사유	없는	비고
총계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이전	시작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 실시 반환 불가	후에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10일	이전 이내	후		점포 이전 반환 불가	후에	점포이전 합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에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 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 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고집132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고집 132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 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 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 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위 사항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 업자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 확하여야 한다.

위 사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에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고집132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 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제주 숙성 특삼겹			
제주 숙성 쫄깃살			
제주 숙성 도끼갈비 2인분			
제주 숙성 망치갈비 2인분			
제주 숙성돼지 김치찌개			
꽃게 된장찌개			
고집 막국수			
파무침비빔밥			
비빔국수			
김치라면		1회 위반 : 구두 경고	
폭탄계란찜	왼쪽에 기재된	2회 위반 : 2회 이상	
공기밥	이외의 제품을	서면 시정요구	
야채구이 추가	판매할 수 없음	3회 이상 위반 : 계약	
명란 추가		해지	
참이슬/처음처럼/진로			
한라산			
화요 25			
카스/테라/클라우드			
지평생막걸리			
한라토닉(토니워터2+레몬)			
화요토닉(토니워터2+레몬)			
토니워터 추가			
레몬 추가			

코카콜라/스트라이트		
환타(오렌지/파인애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제주 숙성 특삼겹	16,000		메뉴 가격은 시장 상황과
제주 숙성 쫄깃살	16,000	서면 또는 POS로 공지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변동될
제주 숙성 도끼갈비 2인분	41,000	1002 0 1	수 있음.

제주 숙성 망치갈비 2인분	39,000
제주 숙성돼지 김치찌개	7,000
꽃게 된장찌개	7,000
고집 막국수	7,000
파무침비빔밥	6,000
비빔국수	6,000
김치라면	3,500
폭탄계란찜	3,000
공기밥	1,000
야채구이 추가	3,000
명란 추가	3,000
참이슬/처음처럼/진로	4,000
한라산	5,000
화요 25	20,000
카스/테라/클라우드	5,000
지평생막걸리	5,000
한라토닉(토니워터2+레몬)	10,000
화요토닉(토니워터2+레몬)	25,000
토니워터 추가	2,000
레몬 추가	2,000
코카콜라/스트라이트	2,000
환타(오렌지/파인애플)	2,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한식(돼지고기)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고집132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다만, 특수상권인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별도의 영업지역을 설정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만약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 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고 집132'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 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고집13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대리점			
일반소매점			
기타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미	메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고집132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에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 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1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1 -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_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 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_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_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제1항제1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 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제1항제2호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6조제1항제1호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6조제1항제3호
고집132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6조제1항제4호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 게 높은 경우는 제외)	제36조제1항제5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 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기 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 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29조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 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 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	제37조제2항제1호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7조제2항제2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7조제2항제3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7조제2항제4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제37조제2항제5호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제37조제2항제6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7조제2항제7호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7조제2항제8호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7조제2항제9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계약 갱신 시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로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만약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010-2859-2600)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했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상속사실 통지 → 당사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 가맹본부는 상속인과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고집132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서양식을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010-2859-260 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고집132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30 ~ 23:00	연중 무휴	문의(010-2859-26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관리감독자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본사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본사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본사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에 귀하의 서명을 받아, 고집132과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고집132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H	고노그 사건	부담	비율	보다 저희	비고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광고	전국 단위	전액 부담	없	광고 계획 공고 또는 서면 통지 → 가맹점의 동의서 작성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광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가맹점 단위	없음	전액 부담		매장 광고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판촉행사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동의서 작성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	라 유동적			

전국 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 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제37조 계약의 해지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2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가맹계약서 제42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당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직접 원·부재료 등을 조달할 경우에는 가맹점사 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제38조 제1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종료일로부터 하루 300,000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39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맹 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무단 폐점, 무단 영업표지 변경, 무단으로 영업양도 등을 한 경우에는 가맹 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혐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등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	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 (1일)	14p 참조
점포 실측/설	ᆁ	- 투자비 산출	D-27~25 (3일)	
실내·외 공사	착수	- 도면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 (1일)	
인테리어 공	사	- 공사 실시	D-24~5 (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30~1 (30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 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화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 포 환 경 개 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 게 지급 (단,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일지급 가능)	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부담액의 30%,

2. 판매촉진행사 시에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판촉장려금					
판촉지원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반품지원					
마일리지					
CRM					
테스터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 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010-285 9-260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010-285 9-260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고집132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고집132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레시피 전수, 메뉴에 대한 기본교육, 운영 매장에서 실습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규 레시피 전수 등	실습교육		필요 시 실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고집132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 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2주 이내	11,000	최초 계약시 필수 이수
보수 교육	1주 이내	실비	필요시 실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 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0조 제6항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0조 제7항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해당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10-2859-26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 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